

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5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8. 25. 허옥희 의원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9. 05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9. 13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고성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라.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마.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바.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26호
- 예고기간: 2023. 8. 29.(화) ~ 2023. 9. 4.(월) 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□ 제정 취지(필요성)

- 고성군 소속 직원 간 업무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 - 입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, 직장, 직원 등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와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함.
 -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정의 비교
 - 직장 내 괴롭힘: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 - 갑질: 사회·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,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(법령 등 위반, 기관 이기주의, 부당한 민원 응대 등)
 - 고성군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정의하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음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, 발생 시 해소를 위한 신고 근거 조항을 마련함.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(안 제5조~제6조)
 - 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, 발생 시 조치 절차를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하도록 함.

-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 - 피해 직원과 조사 협력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,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방해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함.
- 실태조사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 -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.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문제점이 없으며,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,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